

1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소개

▶ 개 념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 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함
-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 관련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이상인 시설물)
- 운영기간 : 2023. 8. 1. ~ 2024. 7.31
-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 4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총 경감률 : $[1-(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10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주차장 폐쇄, 계절 관리제 참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 ※ 코로나 등 재난·재해 및 서울시 정책방향 변경시 감축프로그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공지 이후에는 감축프로그램 불인정(공지전까지의 실적은 월할 및 일할 계산)

▶ 참여방법

1. 수요관리 참여접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기업체 → 관할구청)

- 접수기간 : ~ 2023. 7. 31.(2023. 8. 1 이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
 - ※ 2024. 4.30.까지 접수 가능, 2024. 5. 1.이후는 접수 불가(3개월 이상 이행 필요)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
 - ① 인터넷 접수 : <https://s-tdms.seoul.go.kr/>
 - ② 서면접수 : 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 접수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초기자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소 이행기간

- 참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필요
 -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유연근무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참여기간 중 연속 이행 불필요
 - ▶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시설물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주차장 폐쇄, 계절관리제 참여), 기타(녹색교통환경 조성)

2. 수요관리 이행점검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점검 (관할구청 → 기업체)

- 점검기간 : 2023. 8. 1. ~ 2024. 7. 31.
-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 ① 서면점검 : 기업체(시설물)에서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제출 서류 확인
 - 기업체가 월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이행관련 증빙서류(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별 이행확인 실시(<https://s-tdms.seoul.go.kr/>)
 -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② 현장점검 : 자치구 단독점검 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 및 암행점검 실시
- 점검횟수 : 분기별 1회 이상(불시점검)
 - ※ 총면적 3천㎡미만 시설물 : 반기별 1회 이상, 3천㎡이상 시설물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기업체(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참여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3. 수요관리 감면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기업체 → 관할구청)

- 신청기간 : 2024. 7. 31. ~ 8. 31.
- 접수방법 : 서면접수와 인터넷 접수
 - ① 서면접수 : 기업체(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 ② 인터넷 접수 : <https://s-tdms.seoul.go.kr/>
- 신청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4. 수요관리 감면결정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른 경감 (관할구청)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결정기간 : 2024. 9. 1. ~ 9. 30.
- 경감방법 : 서울시 조례에 의거 이행결과에 따라 경감, 기타는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결정

5. 수요관리 감면통보

경감결과 통보 (관할구청 → 기업체)

- 경감통보 :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조정신청 :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 불시점검 및 이행점검

이행 점검 (시 → 기업체)

- 운영기간 중 기업체(시설물)의 프로그램 참여 활동 점검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 서류와 점검결과와 참여 활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연도 경감 제외



2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5부제, 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5부제)	개정 (‘20.5월)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2부제)	
2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월)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월)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5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개정 (‘20.5월)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사자 이용자	5~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9	업무택시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월)
10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월)



1-1. 승용차 부제 운영 (5부제)

정 의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20% 범위 내	
이행기준	• 승용차번호 끝번호의 숫자와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예 : 23가1562 → 2일/7일 운행제한) •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끝번호 지정하여 운영(주말과 공휴일 제외) (예 :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 단, 주차면수의 4%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서울시 조례 제9조)	
운영방법	• 승용차 5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5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선택), 단, 미 배치시,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점검방법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경감 • 위반대수가 하루 4%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토요일, 공휴일 제외)의 4%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서울시 조례 제9조)	
제출서류	<신청시> • 이행계획서, 초기자료 - 초기자료 : 제외차량 현황 및 증빙자료 입간판 설치	<매달 실적 입력> • 차량 출입자료(07~20시)(차량번호, 출입시간) • 예외차량 리스트(변경시 증빙자료 해당달 입력) • 종사자 차량 리스트
중요사항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시 경감 가능 단,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감비율의 1/2 적용 • 시설물 종사자, 이용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서울시 저출산 대책) - 임신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등승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1-2. 승용차 부제 운영 (2부제)

정 의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40% 범위 내	
이행기준	• 홀짝제로 운영하고,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홀수) 차량은 운행 제한 < 예 : 1일/3일/5일/7일/9일 → 23가1562 운행 제한 > • 단, 주차면수의 10%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서울시 조례 제9조)	
운영방법	•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 •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선택), 단, 미 배치시,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할수 있는 시스템 필요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점검방법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경감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토요일, 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서울시 조례 제9조)	
제출서류	<신청시> • 이행계획서, 초기자료 - 초기자료 : 제외차량 현황 및 증빙자료 입간판 설치	<매달 실적 입력> • 차량 출입자료(07~20시)(차량번호, 출입시간) • 제외차량 리스트(변경시 증빙자료 해당달 입력) • 종사자 차량 리스트
중요사항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시 경감 가능 단,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감비율의 1/2 적용 • 시설물 종사자, 이용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서울시 저출산 대책) - 임신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등승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주차장 유료화

정 의	•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40% 범위 내 (주차요금에 따라 차등)											
이행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무료주차시간 없음) - 기업·단체 등의 소유승용차(대여차량 포함)로써 해당 차량 사용본거지가 시설물 소재지이며, 업무시간 내에 다수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 • 단, 주차면수의 5%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서울시 조례 제9조)											
운영방법	• 주차장 요금표(입간판, 벽면부착식 등) 설치 • 주차요금 징수 요원(주차장 관리요원) 배치(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시설은 요원 배치 불요)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점검방법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 제출 (차량번호, 출입시간, 차량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 시 경감 불가 ※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 경감률 4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수준에 따라 경감 <table><tr><td>요금수준</td><td>≥90%</td><td>≥110%</td><td>≥140%</td><td>≥150%</td></tr><tr><td>경감율</td><td>10%</td><td>20%</td><td>30%</td><td>40%</td></tr></table> 요금수준 = $\frac{\text{시설물 주차요금}}{\text{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 주차요금수준이 다양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총경감률= $\frac{(\text{주차권1의 경감률})+(\text{주차권2의 경감률})+(\text{주차권3의 경감률})+\cdots}{\text{주차권 종류 개수}(n)}$		요금수준	≥90%	≥110%	≥140%	≥150%	경감율	10%	20%	30%	40%
요금수준	≥90%	≥110%	≥140%	≥150%								
경감율	10%	20%	30%	40%								
제출서류	<신청시> • 주차요금표 • 기업,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	<참여중> • 월별 주차요금 징수현황(일자별 주차대수, 주차요금 명시)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차량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된 원본 데이터) • 배포하는 할인 주차권 일체(할인 적용된 금액이 노외주차장 요금 수준의 90이하일 경우 총경감률에서 제외됨)										
중요사항	• 무료주차권 배포, 무료주차행위 허용 금지 - 무료주차권 발급 확인시 당해연도 해당 프로그램 경감 불허 ※ ‘무료주차권’이란 주차장 유료화 참여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유료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서를 의미 • 동승자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 차량 및 주차시간 10분 미만 차량은 적용 예외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3-1. 주차장 축소(일반 주차장)

정 의	•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20% 범위 내	
이행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 (최소 10면 이상)(단,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운영방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 서류 제출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축소 전, 축소 완료, 축소 지속 여부 등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 여부 확인 (단,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 - 축소당해연도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 서류 - 당해연도 외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경감방법	- 경감율 20%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작은값 (20%, 축소비율) $\text{축소비율} = \frac{\text{변경 전 주차면수} - \text{변경 후 주차면수}}{\text{변경 전 주차면수}}$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 100% 인정 - 충전시설 외 이동시설로 전환 시 : 50% 인정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 미인정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 - '23년 7월까지 축소시 '23년 부과분부터 경감, '23년 8월 이후 축소시 '24년 부과분부터 경감 ※ 주차장 축소 후 3년 이내 추가 축소 시 20% 범위내에서 중복 경감 가능	
제출서류	<신청시> 주차장 축소 계획서	<참여중>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중요사항	•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3-2-1. 주차장 축소(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정 의	•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30% 범위 내	
이행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내 주차면수 축소(단,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운영방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축소 전, 축소 완료, 축소지속 여부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 (단,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 - 축소당해연도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서류 - 당해연도 외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경감방법	- 축소비율이 법정주차면수(최고한도) 대비 50% 이상인 경우 : 경감율 30% 적용 (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동일한 주차면수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율을 적용하되, 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 ※ 법정주차면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3(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명시한 최고한도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 100% 인정 - 충전시설 외 이동시설로 전환 시 : 50% 인정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 미인정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제출서류	<신청서> 주차장 축소 계획서	<참여증>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건축물 관리대장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중요사항	• 자전거 거치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3-2-2. 주차장 축소(주차면수 “0”)

정 의	•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40% 범위 내	
이행기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내 주차면수 축소(단,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운영방법	-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 - 주차장 축소 완료 서류 제출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축소 전, 축소 완료, 축소 지속 여부 - 현장점검 : 주차장 축소 여부 확인(단, 물리적 축소로 인해 주차 불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점검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 서류 - 축소 당해연도 : 주차장 축소 계획서, 축소 완료 서류 - 당해연도 외 :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	
경감방법	- 주차면수 “0”인 경우 : 경감율 40% 적용 (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주차면수 “0”을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율을 적용하되, 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 미인정 - 장애인, 긴급자동차, 화물조업 주차면 등 제외 -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차면수는 제외 -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	
제출서류	<신청시> 주차장 축소 계획서	<참여중> -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증빙서류 : 도면, 사진 등) - 건축물 관리대장 -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
중요사항	-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 - 주차장 축소연도와 신청연도가 상이한 경우 신청연도 경감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정 의	• 시설물 주변도로, 주차장내 및 주변 혼잡완화, 불법주차 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대시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10% 범위 내				
이행기준	• 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후 서울시(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				
운영방법	• 주차장에서 운영중인 “로컬 주차정보제공시스템”에서 주차 차량의 변동시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으로 실시간 총 주차 차량수, 입차/출차정보[차량번호, 입차일시, 출차일시], 주차면 센서가 있을 경우 각 주차면의 차량유무를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				
점검방법	• 서류 점검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서(비용포함) • 시스템 점검 -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화면)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실시간 주차가능면 정보 표출 여부 확인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 : http://parking.seoul.go.kr (PC 또는 모바일웹 접속) - 모바일앱 : ‘서울주차정보’ 검색(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윈스토어에서 무료다운)				
경감방법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및 정보제공 : 경감률 10% 범위 내 적용, 최초 1회에 한함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인정 항목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 - 설치비용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간(전년도 8월1일~당해년도 7월31일) 이내에 설치 및 정보제공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당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한해 1회만 경감(소급 적용 안됨)				
	작은값 (10%, 설치비용)				
	• 주차정보 제공 : 경감률 10% 범위 내 적용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다음해부터는 부담금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유지할 경우 정보 표출기간 비율에 따라 부담금 경감 적용 ※ 정보표출기간 확인방법 :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정보제공 이력자료 확인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제공)				
	표출기간 비율(a)	80% ≤ a < 85%	85% ≤ a < 90%	90% ≤ a < 95%	95% ≤ a
	경감률	5%	6%	8%	10%
제출서류	<신청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관리계약서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확인서 (증빙 : 주차시스템 현장 설치 사진, 서울시 주차정보 안내 홈페이지 캡처)		<참여증>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 (비용포함) •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증빙서류 : 서울시 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처 화면(매월))		
중요사항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참여 신청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주차장 운영정보 제출) • 서울시 주차정보제공 Open API(표준연계 정의서) 확인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인정 항목 확인 • 실시간 주차정보는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시민들의 주차편의 증대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포탈, 차량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될 수 있음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5.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정 의	•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 종사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20% 범위 내
이행기준	•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운영방법	• 종사자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샤워실과 거치대(보관소) 등) 필수 설치 • 자전거 이용확인이 가능한 장비(RFID) 설치 또는 앱 등 시스템 자료만 인정 • 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공공자전거‘따릉이’ 포함) 확인 • 이용횟수 월 4회 이상 이용시 1명 인정
점검방법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미만 분기별 /반기별 1회 이상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현장점검 : 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설치 완료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확인(시설물 및 장비 설치 전후 사진, 설치계약서, 설치비용 등)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자치구에 제출한 공공자전거와 일반자전거 이용 증빙자료로 이행여부 확인 - (일반)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RFID 등 시스템에 의한 자료 이행확인(cctv 불인정) ※ 단, 2023년도에 cctv설치, 설치비용을 경감받은 경우, 1회만 인정 가능 - (공공)시설물에서 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개인별 이용내역을 취합하여 제출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자료(이용시간, 이용자(종사자), 이용거리, 금액 등)를 제출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① 20% 범위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자전거 이용확인 장비 설치비용의 50% 경감 - 편의시설 : 샤워실과 자전거거치대(보관소) 등 - 이용확인 장비 : RFID 등 시스템에 의한 자료만 확인(육안확인 불인정) - 편의시설과 이용확인장비 모두 설치 시 경감가능하며, 경감은 신규 설치한 당해연도에 한함 작은값(20%,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 설치비용의 50%) ② 10% 범위내 자전거이용 실적에 대해 경감 작은값(10%, 참여비율) 참여비율 = $\frac{\text{자전거 이용 종사자수(일반자전거 + 공공자전거)}}{\text{총 종사자수}}$ - 자전거 환경구축 완료시설물에 한하여 신청 및 경감인정 가능함(편의시설 유지 증빙 필수) - 자전거이용 실적은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간대(7시~9시, 18시~20시)에 이용한 실적만 인정 ▶ 일반자전거 : 이용확인장비(RFID 등)를 통해 기록된 이용실적 제출 ▶ 공공자전거 : 개인의 출·퇴근시 이용 증빙자료 제출(이용자(종사자), 이용시간, 이용거리, 금액 등 포함)
제출서류	• 전체 종사자, 일반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이용확인장비 설치완료 및 설치비용 증빙자료 (설치계획서 및 편의시설 설치 전후 사진,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 • 7~9시, 18~20시만 인정 •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현황 자료(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현황자료) (이용시간, 이동거리, 이용실적(요금 내역) 등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
중요사항	• 자전거 편의시설 중 샤워실 및 거치대(보관소)는 필수구축 시설이며, 이용확인장비는 시스템에 의한 장비로 제한함 • 자전거 이용환경(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 구축없이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하여 경감인정 불가함 • ‘소속 종사자’란 시설물 내 상주하는 모든 기업체의 종사자를 의미(허위로 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 • 자전거이용 실적으로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공공자전거 이용실적만으로 경감 가능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6-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

정 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2부제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참여대상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5% 범위 내(1회 참여 시 0.3%)
이행기준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짝제로 운영하고,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홀수) 차량은 운행 제한 < 예 : 1일/3일/5일/7일/9일 → 23가1562 운행 제한 > (단, 진입차량의 10%이내 차량 미이행시도 인정)
운영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점검방법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포함)를 제출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을 계산 1회 참여 시 0.3%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승용차 2부제 경감률의 2배로 산정 ※ 승용차 2부제의 평일 하루 경감률은 0.16% -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제출서류	- 입간판 설치 또는 단속요원 배치 현황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6시~21시)의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 종사자 차량 리스트
중요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 중앙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 - 본 프로그램과 승용차 2부제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한 기업체는 승용차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함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종사자 의무 참여,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 - 시설물 종사자, 이용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서울시 저출산 대책) -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등승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6-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정 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는 것
참여대상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10% 범위 내(1회 참여 시 0.6%)
이행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진입을 제한
운영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폐쇄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주차장 진입 차량 제한 - 시설물 종사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단, 주차면수의 10% 이내에서 인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점검방법	- 이행점검 횟수 :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
경감방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을 계산 - 1회 참여 시 0.6%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승용차 2부제 경감률의 4배로 산정 ※ 승용차 2부제의 평일 하루 경감률은 0.16% - 전체 입차 차량의 시설물 진입율(출입차량/주차면수)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제출서류	- 주차장 폐쇄 증빙 사진(입간판 또는 안내문)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6시~21시)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중요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 중앙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중복경감은 불가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종사자 의무 참여,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 - 시설물 종사자, 이용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서울시 저출산 대책) - 임신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등송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6-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정 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다음연도 3월)동안 승용차 2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15% 범위 내														
이행기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운영방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서울시 조례 제10조)														
점검방법	•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원본)로 이행여부 확인 ※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 차량출입자료(차량번호, 출입시간 포함)를 제출 ※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필요시)														
경감방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4개월, 12월~다음연도 3월)동안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경감 <table border="1"><tr><td>이행기간</td><td>4개월 이행</td><td>3개월 이행</td><td>2개월 이행</td><td>1개월 이행</td></tr><tr><td>경감률</td><td>15%</td><td>11%</td><td>7%</td><td>3%</td></tr></table>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제출서류	• 입간판 설치 또는 단속요원 배치 현황 •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6시~21시) (종일 출입차량의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 • 예외차량 리스트														
중요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해당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참여로 인해 중복경감은 불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프로그램과 승용차 2부제를 함께 신청한 기업체는 승용차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2부제 경감률 적용 •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 • 시설물 종사자, 이용자 중 임신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서울시 저출산 대책) - 임신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 임신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경차는 예외로 함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 통근버스 운영

정 의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100명이상)	
경감비율	• 15% 범위 내	
이행기준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단, 당해시설물 기숙사 생활 종사자 제외)	
운영방법	• 통근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점검방법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통근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매월)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경감방법	• 부담금의 15% 범위 내 경감 - 경감율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율은 100분의 50만 적용	
제출서류	<신청시> • 운행계통도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전세계약서 • 종사자 현황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증빙서류)	<참여중> • 운행일지 • 운행차량 증빙사진
중요사항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를 통근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경감가능함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안한 경우 예외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8. 셔틀버스 운영

정 의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 10% 범위 내													
이행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운영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운영방법	•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													
점검방법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셔틀버스 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매월) : 운행계통도, 운행일지													
경감방법	• 부담금의10% 범위 내 경감율 • 경감산정 = 운행비율(10%) - 운행비율 = 일평균 총 운행횟수 [노선1(대수×횟수) + 노선2(대수×횟수) + ……] <table><tr><th>운행비율</th><th>≥10회</th><th>≥20회</th><th>≥30회</th><th>≥40회</th><th>≥50회</th></tr><tr><th>경감율</th><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 1회 : 왕복기준(편도는 제외)		운행비율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율	2%	4%	6%	8%	10%
운행비율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율	2%	4%	6%	8%	10%									
제출서류	<신청서> • 운행계통도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전세 계약서	<참여증> • 운행일지 • 운행차량 증빙사진												
중요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9. 업무택시

정 의	•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참여대상	• 종사자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 ※ 종사자는 소속 회사가 고용한 종사자만 해당되며, 동일한 시설물 내 임차인이 업무택시 회사와 별도계약 또는 협약을 맺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운영방법	•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 •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	
점검방법	• 서류점검 : 업무택시 사용내역 (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	
경감방법	• 월별 계산하고 참여기간 합산하여 적용 • 월별 경감한도금액 범위 내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 경감 - 월별경감금액 = 작은값 (㉓ 월별 경감한도금액, ㉔ 월별 실제사용금액의 50%) ㉓ 월별 경감한도 금액 = (부담금 × 5% ÷ 12개월) ㉔ 월별 실제사용 금액 = 월별 업무택시 이용금액	
제출서류	<신청시> • 업무택시 협약서	<참여중> • 업무택시 이용내역 • 법인(업무택시)카드 지출내역 등
중요사항	• 계약은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미경감	



10-1. 기 타

정 의	기업체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외에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	
참여대상	종사자, 이용자	
경감비율	5% 범위 내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이행기준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수립 및 이행 - 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날(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등),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을 실시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운영방법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	
점검방법	- 현장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운영여부 확인 - 서류점검 : 운영계획서, 운영결과서	
경감방법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 및 그에 준하는 시행효과 제시 5% 범위 내에서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경감	
제출서류	<신청시> 운영계획서	<참여중> 운영결과서(개선효과), 증빙자료
중요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전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유연근무제는 제외) -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비 등을 반영하고, 업종별·시설물별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 이내로 적용	



10-2. 기 타(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정 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방법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자치구(시설공단)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 • 서류점검 : 시설주와 자치구(시설공단)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거주자우선주차 현황 자료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 <table><tr><td>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td><td>≥50%</td><td>≥60%</td><td>≥70%</td><td>≥80%</td><td>≥90%</td></tr><tr><td>경감율</td><td>1%</td><td>2%</td><td>3%</td><td>4%</td><td>5%</td></tr></table>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frac{\text{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text{총 개방면수}}$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경감율	1%	2%	3%	4%	5%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경감율	1%	2%	3%	4%	5%									
제출서류	<신청서> • 건물주 야간개방 참여신청서	<참여증>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 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 거주자우선주차 현황(월단위)												
중요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 개방범위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월~금)으로, 주말만 개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 이내로 적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포함)													



10-3. 기 타(녹색교통환경 조성)

정 의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녹색교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참여대상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5% 범위 내
이행기준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운영방법	-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여 소유등록차량을 없애거나 친환경차량을 소유차량으로 유지하는 것 - 시설물 소유의 주차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주차면과 충전시설을 1개 이상 구축하는 것(단, 급속 충전시설만 해당)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확인 - 서류점검 : 시설물 소유 차량 현황,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설치 완료 증빙서류,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서류
경감방법	- 경유차 폐차 시 : 1% 범위내 (단, 경유차 재구매시 경감 금액은 환수조치하며,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시설물은 모든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인정) - 경유차 폐차 & 친환경자동차 교체시 또는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와 충전시설 구축 시 : 2% (단, 경유차 재구매시 경감 금액은 환수조치하며,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시설물은 모든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인정) - 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만 인정하며 완속충전시설은 해당 되지 않음 (급속)충전시설 구축 &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 : 1% - 모든 경감은 1회에 한함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기 구축하였으나, 경감신청을 못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인정 - 경유차 폐차 & 친환경자동차 교체시 또는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와 충전시설 구축 시 : 2% - 급속충전시설 구축 &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 : 1%
제출서류	- 시설물 소유 등록 차량 현황 -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 - 친환경자동차 구매 증빙 서류 -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 서류
중요사항	- 당해연도에 경유차 폐차와 충전시설 설치 모두 참여 시 최대 2% 경감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 이내로 적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포함)



10-4. 기 타(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정 의	• 기업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종사자 100인 이상)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기업체가 종사자의 60%이상, 5만원 대중교통안심카드 지급, 대중교통이용 종사자의 충전금액 사용확인 후 사용금액만큼 감액							
운영방법	- 종사자에게 5만원 대중교통안심카드 지급(티머니 제조, 수도권 버스, 지하철만 사용 가능) 1인당 1개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 가입 선제 조건(분실시, 카드 전액 환불 가능, 환불시 감액 여부 확인 必) ※ 시범운영으로, 기업체에서 종사자에게 1회 지급 또는 격월, 매월 지급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감율 범위안에 실제 지원금액만큼 경감(필수항목 : 종사자의 60%이상 + 50,000원이상 +1회이상 지급)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대중교통 안심카드 구매 내역 및 대중교통 이용자 지급 내역							
경감방법	-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보조금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th><th>80% 이상</th></tr> </thead> <tbody> <tr> <td>경감율</td><td>3%</td><td>5%</td></tr> </tbody> </table> - 경감율 범위내 지원금액 실적에 대해 경감 작은값(경감율에 의한 경감액, 실제 지원금액)		구분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80% 이상	경감율	3%	5%
구분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80% 이상						
경감율	3%	5%						
제출서류	<신청시> -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신청 - 종사자 100인 이상만 신청 가능 - 종사자의 승용차부제, 승용차유료화 등 예외차량 등록 내역	<참여중> - 대중교통 안심카드 구매 내역(카드번호 포함) - 대중교통안심카드(3,000원) 구매값 포함 - 대중교통 이용자 지급 내역						
중요사항	- 대중교통 이용 확인을 위해 기업체에서 구매한 금액 및 환불금액 확인 절차 必(티머니↔서울시) ※ 동의하지 않을시 경감을 받지 못함 - 구매는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감 - 시범운영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추가 할인 검토 예정 - 교통카드 외의 활용 적발시 전액 환불 예정							



10-5. 기 타(유연근무제 운영)

정 의	•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종사자 50인 이상)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오전 9시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차출근제) • 시설물(사업장)이 아닌 집(재택근무제) 또는 거주지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스마트워크센터) • 참여인원 : 종사자(50명 이상의 사업장)의 30% 이상 참여 • 운영시간 :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 출퇴근 및 재택근무시 근무확인서 등 시스템 구축 必							
운영방법	•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 •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이상(분기별 1회 이상) / 연면적 3천㎡미만(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근무상황부, 출퇴근기록부 등 유연근무제 참여 증빙 서류) - 시스템으로 인한 근무 확인							
경감방법	• 경감률 5% 범위내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table border="1"> <tr> <td>참여율</td><td>≥30%</td><td>≥50%</td></tr> <tr> <td>경감율</td><td>2%</td><td>5%</td></tr> </table> $\text{참여율} = \frac{\text{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text{총 종사자수}}$		참여율	≥30%	≥50%	경감율	2%	5%
참여율	≥30%	≥50%						
경감율	2%	5%						
제출서류	<신청서> • 종사자 50인 이상 + 시스템 구축시 신청 가능 •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 • 전체 종사자 현황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 현황(예정)	<참여증> • 매월 총 종사자수 및 유연근무제 참여자 현황 • 유연근무제 참여 증빙서류(시스템 업로드 必)						
중요사항	•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이후 출근하는 것은 제외 • 당해 시설물의 기숙생활자, 3교대 근무운영자는 제외 • 시설물 업무특성(오피스시간 등)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백화점, 할인마트 등) 제외							



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소개

▶ 개념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시행령(제16조~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개요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년도 7월31일
- 부과기준 : 매년 7월31일
- 부과방법 : 연1회 (부과기준일 매년 7월31일)
-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 ~ 10월31일
- 산정기준 : 시설물연면적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총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
 - 총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 ㎡당 350원
 - 총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 3,000㎡, 30,000㎡를 기준으로 단위부담금 차등 부과

구분	3,000㎡이하	3,000㎡초과~30,000㎡이하	30,000㎡초과	비고
단위부담금	700원	1,400원	2,000원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 재원 사용처

- 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



별첨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 나. 주차수요관리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수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 다.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거치대),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CCTV, RFID 등 자전거 이용확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라. 삭제
 - 마.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바. 셔틀버스 운영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 사.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 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
 - 아. 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주차면을 배치하고 업무공유카 이용 또는 일반이용을 유도하는 것(삭제 예정)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해 2부제 및 주차장폐쇄 등으로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1. 송배전용변전소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배수펌프시설·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3.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4.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담금부과대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복리시설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며,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2.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설은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시설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

제5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 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교통수요 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특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 : 반기별 1회 이상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프로그램은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주차정보제공시스템과 같이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 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자치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

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5부제 및 2부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경감심의 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경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경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해당 구의회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⑤ 경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외의 경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접수, 경감비율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총액에는 일반운영비 등 징수관련 경비를 포함한다.

- 1. 교부총액의 2분의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
- 2. 교부총액의 2분의1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따라 교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부금은 교통수요 관리실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교부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5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일 : 짝수차량 운행제한 / 짝수일 : 홀수차량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table><tr><td>구분</td><td>a≥90%</td><td>a≥110%</td><td>a≥140%</td><td>a≥150%</td></tr><tr><td>경감률(b)</td><td>10%</td><td>20%</td><td>30%</td><td>40%</td></tr></table>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구분	a≥90%	a≥110%	a≥140%	a≥150%	경감률(b)	10%	20%	30%	40%	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구분	a≥90%	a≥110%	a≥140%	a≥150%								
	경감률(b)	10%	20%	30%	40%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frac{\text{변경 전 주차면수} - \text{변경 후 주차면수}}{\text{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 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40% 경감 ※ 단, 각종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부담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 제공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은 해당 연도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종사자	○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샤워시설, 보관소(거치대)) 및 이용확인 장비 (RFID, CCTV 등) 설치와 설치비용에 대해 경감 (단,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연도만 경감) - 부담금 10% 범위내 출·퇴근하는 소속종사자의 자전거 이용(공공자전거 포함)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자료, CCTV영상 등)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작은값 (10%,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이용률 = $\frac{\text{자전거 이용 종사자수(일반자전거 + 공공자전거)}}{\text{총 종사자수}}$ ※ 자전거 이용 경감은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가 모두 수반된 시설물만 참여 가능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미세 먼지 저감 을 위한 주차 수요 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3%, 최대 5% 까지 경감 (위반율(위반차량/입차차량)이 10% 이하인 경우만 인정)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폐쇄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 - 1회 참여 시 0.6%, 최대 10% 까지 경감 (위반율(출입차량/주차면수)이 2% 이하인 경우만 인정)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2부제를 실시하여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참여시설물이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자료(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 등이 포함)를 제출하여 이행확인 ○ 12월부터 3월까지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계산 <table><tr><td>이행기간</td><td>4개월 이행</td><td>3개월 이행</td><td>2개월 이행</td><td>1개월 이행</td></tr><tr><td>경감률</td><td>15%</td><td>11%</td><td>7%</td><td>3%</td></tr></table> - 위반대수가 하루 10%이하,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공휴일 제외)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이행 인정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								
경감률	15%	11%	7%	3%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 경감산정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table><tr><td>일평균 총 운영횟수</td><td>10회이상</td><td>20회이상</td><td>30회이상</td><td>40회이상</td><td>50회이상</td></tr><tr><td>경감률</td><td>2%</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이상	20회이상	30회이상	40회이상	50회이상	경감률	2%	4%	6%	8%	10%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
		일평균 총 운영횟수	10회이상	20회이상	30회이상	40회이상	50회이상								
경감률	2%	4%	6%	8%	10%										
업무택시제	종사자	○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5%범위 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 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 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속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3. 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4조 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 설 개 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 여부	세부사항	
	계		-			
	승 용 차 제	5 부 제	2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O, X	
		2 부 제	40			
	주 수 관 차 요 리	주 유 차 료 장 화	40		주차요금 : 원 / 분 (월 원) 무료주차면수 : 무료주차시행 : O, X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 제출 가능 : O, X	
		주 축 차 장 소	40		기존 주차면수 : 축소 예정 주차면수 : ※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미인정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여부 : 법정 주차면수 :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0		신규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자 전 거 이 용 구 축		20		1. 편의시설 및 이용 확인 장비 설치 자전거이용환경 설치 계획(완료) 시설물 : 샤워실, 보관소(거치대) 자전거이용확인 장비 구축 계획(완료) : RFID, CCTV, 기타 2.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 설치 완료 또는 완료예정 시설물) 종사자수 : 명 자전거이용 총 이용자 수 : 명 자전거이용 이용자수 : 명 공공자전거 이용자수 : 명 자전거이용 증빙 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 리	미 세 먼 지 비상저감조치 발 령 시 2 부 제 참 여	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Q X
	미 세 먼 지 비상저감조치 발 령 시 주 차 장 폐 쇄	10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Q X
	미 세 먼 지 계 절 관 리 제 참 여	15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 증빙자료(차량번호, 일자, 출입시간 등) 제출 가능 : Q X
통 근 버 스 운 영		15		운행대수 : 대 (총좌석수 석) 총 종사자수 : 명 운영방법 : 출근운영 / 퇴근운영 / 출·퇴근운영
셔 틀 버 스 운 영		10		운행대수 : 대 (총 좌석수 석) 운영횟수 : 회, 운영노선수 : 개 운영시간 :
업 무 택 시 제		5		계약업체 :
기 타		5		참여활동 :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계 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〇〇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			
	승 용 차 제	5 부 제	20			
		2 부 제	40			
	주 수 관 차 요 리	주 차 장 유 료 화	40			
		주 차 장 축 소	40			
		주 차 정 보 제 공 템 시 스	10			
	자 전 거 이 용 환 경 구 축		20			
	미세먼지 저 감 을 위 한 주 차 수 요 관 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 근 버 스 운 영		15			
	셔 틀 버 스 운 영		10			
	업 무 택 시 제		5			
	기 타		5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실 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대표자)		소속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승용차부제	5 부 제	20			
		2 부 제	40			
	주수관차요리	주 차 장 유 료 화	40			
		주 차 장 축 소	40			
		주 차 정 보 제 공 템	10			
	자 전 거 이 용		20			
	미세먼지저감위한주차수요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5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15			
	통 근 버 스 운 영		15			
	셔 틀 버 스 운 영		10			
	업 무 택 시 제		5			
	기 타		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별첨 3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담당자 연락처

연번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1	종로구	교통행정과	2148-3265	http://www.jongno.go.kr/
2	중구	교통행정과	3396-6206	http://www.junggu.seoul.kr/
3	용산구	교통행정과	2199-7743	http://www.yongsan.go.kr/
4	성동구	교통행정과	2286-6012	http://www.sd.go.kr/
5	광진구	교통행정과	450-7913	http://www.gwangjin.go.kr/
6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2127-4865	http://www.ddm.go.kr/
7	중랑구	교통행정과	2094-2579	http://jungnang.seoul.kr/
8	성북구	교통행정과	2241-3404	http://www.seongbuk.go.kr/
9	강북구	교통행정과	901-5914	http://www.gangbuk.seoul.kr/
10	도봉구	교통행정과	2091-4156	http://www.dobong.go.kr/
11	노원구	교통행정과	2116-4034	http://www.nowon.kr/
12	은평구	교통행정과	351-7753	http://www.eunpyeong.seoul.kr/
13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330-1482	http://www.sdm.go.kr/
14	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07	http://www.mapo.go.kr/
15	양천구	교통행정과	2620-3688	http://www.yangcheon.go.kr/
16	강서구	교통행정과	2600-4108	http://gangseo.seoul.kr/
17	구로구	교통행정과	860-3367	http://www.guro.go.kr/
18	금천구	교통행정과	2627-1683	http://www.geumcheon.go.kr/
19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2670-4234	http://www.ydp.go.kr/
20	동작구	교통행정과	820-9629	http://www.dongjak.go.kr/
21	관악구	교통행정과	879-6854	http://www.gwanak.go.kr/
22	서초구	교통행정과	2155-7179	http://www.seocho.go.kr/
23	강남구	교통정책과	3423-6374	http://www.gangnam.go.kr/
24	송파구	도시교통과	2147-3127	http://www.songpa.go.kr/
25	강동구	교통행정과	3425-6243	http://www.gangdong.go.kr/